2011.10.31 제154章 Weekly

이슈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포커스

옴니버스 Ⅱ 지침 제정안에 대한 최근 논의

금융보험 해설

개인연금의 이해(7): 노후생활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내금융 뉴스

2011년 3/4분기 실질 GDP 3.4% 성장 대한상공회의소, 재정위기 관련 국내 영향 설문조사

해외금융 뉴스

북미 오바마 대통령,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유럽 유럽 은행 지본 획충 · 그리스 국채 상각률 조정 · EFSF 확대에 합의

- EU 재무장관회의 취소 결정
- 그리스 민간 채권단 손실부담 비율 상향조정 논의
- 독일과 프랑스,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강조
- _ 제2차 유럽 정상회의 개최 후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 발표

일본 일본 사무라이본드 발행 사상 최대치 갱신 전망

중국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가입 의무화와 인건비 상승 우려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Weekly 2011.10.31 이슈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 조작·가공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며, 가·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통사고 확인기능'이라 함.
- 그러나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와 과실상계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함.
 -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컸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하고, 상대피해자가 진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함.
 - 또한, 응답자의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가해자로 오해받았거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그침.
-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계 피해보다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 상대피해자의 부정청구에 따른 보험료 할증 피해 방지와 과실책임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 장출동을 기다리거나, 사고현장사진을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 사기록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함.

1. 검토배경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은 물론 손실 조작·가공을 이용한 보험금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며, 가·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1)
 - 「도로교통법」제54조제2항에 교통사고의 경찰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 대법원은 '「도로 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함.
 - 또한, 「상법」제657조는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과 보험회사의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첫째, 199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교통사고 경찰신고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교통사고의 경찰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²)
 - 둘째,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때문에 사고당사자가 경찰신고를 기피하고, 가능한 경찰 개입 없이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셋째, 사고당사자의 사고 발생 통지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사고통지가 지연 되어 사고현장 초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넷째, 보험금 청구 시 사고현장사진 등 현장초동조사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 및 피해규모가 가공 또는 조작될 수 있음.
 - 다섯째, 견인 및 환자이송 수수료 관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견인차 및 구급차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훼손함으로써 경찰 및 보험회사의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을 어렵게 함.
 - 여섯째,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 내용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¹⁾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를 통해 사고원인 및 손실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교통사고 확인 기능'이라 함.

²⁾ FY2008 기준 교통사고 경찰신고 건수는 보험사고접수 건수의 21%에 불과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람. 송윤아(2011. 6. 7),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보험사기 감소효과」, 주간이슈, 『Kiri Weekly』 제134호, 보험연구원.

- 이에 본고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해 보험연구원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무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1,014명의 사고운전자를 대상으로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함.

2.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응답자 중 41%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통사고 관련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의 30%가 경찰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미비를 들고 있음.
 - 특히, 응답자 중 12.8%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적발 및 처벌받지 않으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함.
 - 또한, 응답자의 16.7%는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경찰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 외 운행상의 편리함(31.5%), 법규의 비현실성(13%), 법규에 대한 무지(8.6%)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함.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 또는 신뢰한다는 의견은 40%에도 미치지
 못함.
 -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4.5%, 불신 또는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8.7%를 차지함.

³⁾ 송윤아(2010. 7. 26),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 주간이슈, 『Kiri Weekly』 제91호. 보험연구원.

-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보상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1.8%, 불신 또는 불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8.2%를 차지함.
- 실제로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또는 불공정한 과실상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고운전자일수록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
 -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경험이 있는 사고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경찰과 보험회사에 대해 각각 22.3%, 20.7%가, 반면 과장청구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는 각각 10.6%, 13.0%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불공정한 과실상계 경험이 있는 사고운전자 중 동 사항에 대해 각각 24.7%, 22.5%가, 해당 경험이 없는 사고운전자의 경우 각각 17.0%. 16.9%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피해경험 유무별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에 대한 인식

구분	상대피해자의 과장청구 피해경험		불공정한 과실상계 피해경험	
	유경험자	무경험자	유경험자	무경험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 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22.3%	10.6%	24.7%	17.0%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보상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20.7%	13.0%	22.5%	16.9%

■ 이처럼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불신과 불만은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와 불공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경험・인식 등을 통해 가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자동차 보험금 부정청구 피해에 대한 경험과 태도



 자신의 보험회사가 상대피해자의 치료 및 차량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컸다는 응답이 27.3%를 차지함.

-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피해자가 진실하게 치료 또는 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8%에 불과함.
 - 응답자 중 59%는 통원치료가 권장되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고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응답자 중 62.8%는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및 수리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30.9%는 가족이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 상을 받을 경우 부상 및 손해에 대해 약간의 엄살은 괜찮다는 조언을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냄.
 - 반면, 68%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만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겠다는 의 격을 보임.
- 응답자 중 82.3%는 과잉진료 또는 수리 등을 적발·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한편, 38.8%는 경찰신고의무대상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냄.
 - 반면, 현행 경찰신고대상 사고의 범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8.9%를 차지하며, 동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를 차지함.
-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통보함으로써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구가 적어도 17%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고 당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적어도 20%, 그리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할 경우 22% 가량 부정청구가 감소할 것으로 봄.

〈표 2〉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따른 부정청구 기대 감소율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부정청구 기대 감소율	
		과잉수리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는 경우	17.7%	18.0%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및	10.00/	10 50	
초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18.8%	19.5%	
사고 발생 즉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00 FW 01 FW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20.5%	21.5%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하는 경우	21.9%	22.7%	
상기 모든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	28.5%	29.0%	

주: 상기 열거된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임.⁴⁾

-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전화로 신고 또는 통보하거나, 이들의 현장출동을 기다리거나,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또는 '항상' 수 용하겠다는 의견이 47% 이상을 차지함.
 - 다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적극적 경찰신고 의지가 47%에서 35.8%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수용도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응답		
		대부분 수용	항상 수용	
사고 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다	38.7%	43.4%	3.5%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다	40.8%	29.5%	6.3%	
사고 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한다	30.8%	48.5%	13.0%	
사고당사자가 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43.4%	6.6%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기록 공유를 허용한다	32.3%	50.2%	7.5%	

⁴⁾ 송윤아(2011, 10, 5),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주간포커스, 『Kiri Weekly』 제151호, 보험연구원,

4. 불공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경험과 태도



- 응답자 중 22.8%는 사고현장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인해 가해자로 오해받았거나 과실책임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교통사고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거나 정확한 과실책임 규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흔하다는 의견이 39.8%를 차지함.
 - ◎ 경찰과 보험회사의 과실상계에 대해 신뢰 또는 만족한다는 의견은 각각 33.7%, 28.7%에 불과함.
- 교통사고 초동조사의 미비 또는 부재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사고로 상대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경우 응답자의 76.1%가 경찰에 동사고를 신고하겠다는 의견이었으나, 범칙금과 벌점 부과 가능성이 제시되자 응답자의 67.9%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냄.
- 응답자 중 62.2%는 사고원인과 괴실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임.
 - 적극적 경찰 개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고운전자는 불공정한 과실상계의 피해보다는 상대피해자의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실상계와 달리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줌.
- 경찰과 보험회사의 철저한 초동조사를 비롯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이 제고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72% 이상을 차지함.
 - 사고 발생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동 사고를 통보함으로써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한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본 응답이 72.5%를 차지함.
 - 또한, 사고 당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 답한 응답자가 72.5%임.

● 응답자 중 72.7%는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할 경우 과실상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봄.

〈표 4〉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에 따른 과실상계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기대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방안	과실상계의 공정성 제고 효과 기대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경찰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경우	72.5%	
사고 발생 즉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통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현장출동 및 초동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74.1%	
사고 발생 즉시 사고당사자가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 촬영하여 이를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72.5%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하는 경우	72.7%	
상기 모든 조치가 병행되는 경우	75.2%	

5. 제언



- 교통사고 발생 시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정확한 과실책임 규명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이상,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조사정보 공유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불공정한 과실상계의 피해보다는 보험금 부정청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정청구의 경우 보험회사만의 역량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줌.
 - ◎ 경찰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부정청구 방지는 82.3%, 정확한 과실상계는 62.2%임.
- 경찰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기능 제고를 위해 첫째,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 가 구호조치 후 사고현장에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전화로 사고 발생을 신고 또는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사고당사자는 현행과 같이 경찰의 조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인피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되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고당사자는 신고기관에 사고위치,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분과 연락정보,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둘째, 교통사고 통합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경찰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경찰 또는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신고가 되면 해당 사고는 경찰과 보험회사가 공유하는 교통사고 통합DB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사고현장 초동조사를 마친 경찰 또는 보험회사가 사고조사 내용을 교통사고 통합DB에 입력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교통사고 통합DB를 통한 사고조사 내용의 열람 및 공유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함.
- 셋째, 사고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 또는 보험회사는 현장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출동 대신 사고당사자로 하여금 사고현장 사진을 첨부한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통합DB와 연계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현장이 보험회사, 경찰서, 모두에 게 전송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사고신고서를 DB에 입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고당사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사고현장 사진을 포함한 사고신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출동 비용 절감에 따라 사고당사자에게 요율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통합DB의 구축 및 운영 시 경찰이 모든 교통사고의 사고내용을 인지하게되어 사고운전자들의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및 벌금 기준의 한시적 완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